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등 >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63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등	2
※ 참고: 살생물물질·제품 재승인 도래 시점	10

I. 제안경위

2026년 5월 14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승인을 위한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1조).

Ⅲ. 검토의견

1.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유효기간 연장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 또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에 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을 신청받고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전단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u>
<u>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 등에----- -----.</u>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 ③ (생략)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을 신청받고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전단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 등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¹⁾을 제조·수입하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에 관한 승인²⁾을 받도록 규정³⁾하고 있음.

2)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수행하고 있음.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삭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4.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2.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④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2.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⑤ 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 6.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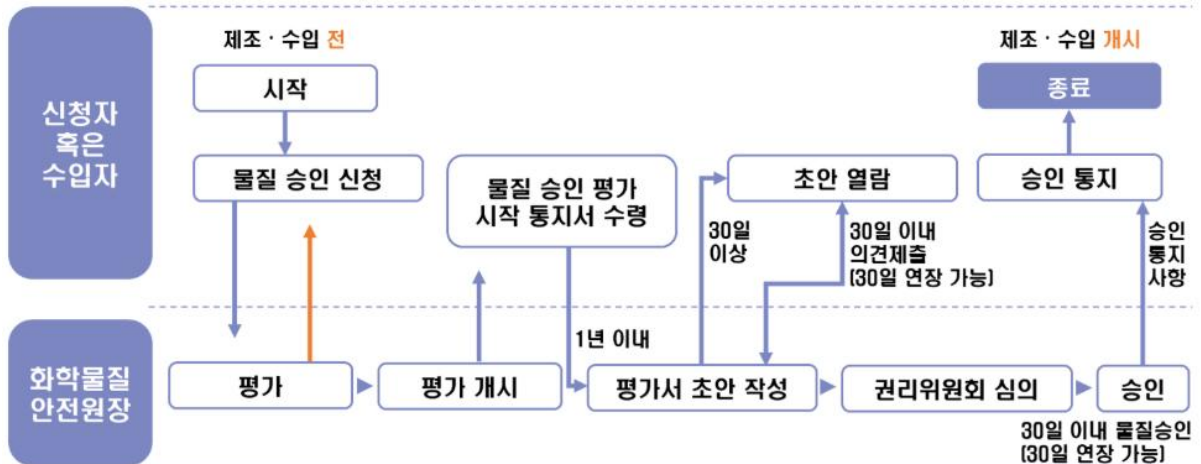
1.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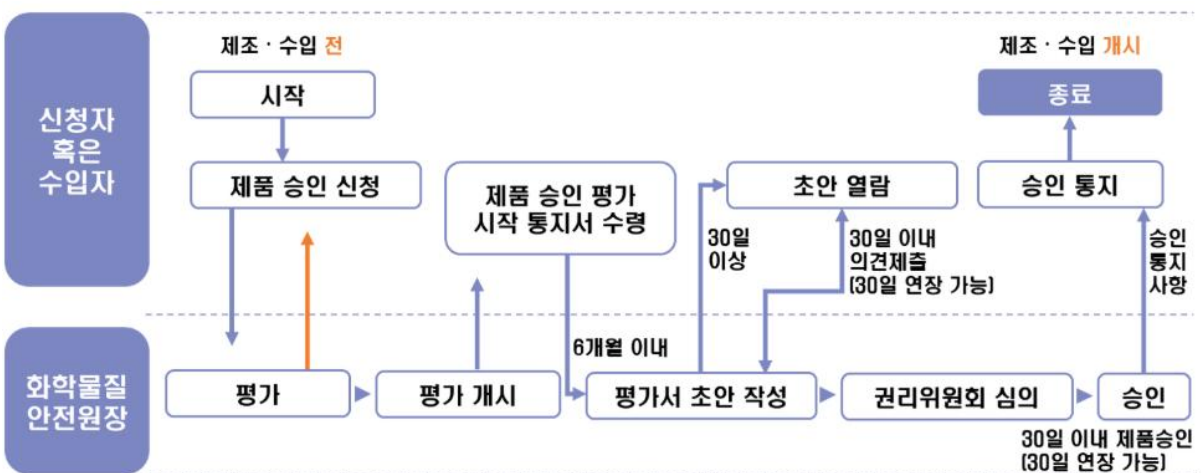
⑥ 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삭제 <2020. 3. 24.>

[살생물물질 승인 절차]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



한편, 현행법에서는 살생물물질의 승인(물질승인)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제품승인)에 각각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물질승인의 경우 10년 이내(기준이 완화되거나 민감한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 제품승인의 경우 10년 이내(기준이 완화되거나 민감한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 등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이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해당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을 제

조·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이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유효기간 종료 1년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⁴⁾.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물질승인	제품승인
1.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 4.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 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라. 효과·효능 마. 분류 및 표시 5.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1.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 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라. 효과·효능 마. 분류·표시 및 포장 5.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7. (생략)

그러나 물질승인의 경우 최종 평가 종료 및 승인 결과 통지까지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제품승인의 경우에도 평가 및 행정절차에 약 1년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재 승인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유효기간을 고려할 때 재승인 신청이 2029년, 2031년 및 2034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⁵⁾되는데,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가 법률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재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기존 승인 유효기간이 먼저 만료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재승인을 받을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재승인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②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12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20조제6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또한, 현행법에 따라 승인유예를 적용받고 있던 기존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유예 종료 기간이 중첩되어 평가 소요기간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제조·수입업자가 적법하게 재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정부의 평가·행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 유효기간 내에 재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출이 면제되는 자료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승인 절차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영업활동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⁶⁾.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이 법 시행 이후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승인을 적법하게 신청한 제조·수입업자를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자와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②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개정 내용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사례⁷⁾⁸⁾와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6)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정부의 안정적인 재승인 평가 기간 확보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입장임.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되, 제조·수입업자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조치 등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 하도록 하였음.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개정안의 내용도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6

법률 제21125호 부칙 제2조(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8)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까지(현행 2년)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할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동 개정내용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하도록 하였음.

법률 제21310호 부칙 제2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 고

살생물물질·제품 재승인 도래 시점

- 현재까지 승인된 물질·제품의 재승인 신청은 '29년, '31년, '34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 특히 '29년과 '31년은 III~IV그룹 살생물제품 최초 승인 일정과 중첩되어 재승인 평가이행에 영향 예상

유효기간 종료	재신청 기한	재승인 대상(건)	기존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중첩 여부
'27년 12월	~'26년 12월	물질 3 제품 8	III그룹 물질 평가기간 중첩
'29년 12월	~'28년 12월	물질 8	IV그룹 물질 평가기간 중첩
'30년 7월 10월 12월	~'29년 7월 10월 12월	제품 21 제품 12 물질 1 제품 14	III그룹 제품 평가기간 중첩
'31년 2월 12월	~'30년 2월 12월	물질 1 제품 13 물질 1	IV그룹 제품 평가기간 중첩
'32년 12월	~'31년 12월	물질 44	
'33년 12월	~'32년 12월	물질 2	
'34년 2월 3월 7월 12월	~'33년 2월 3월 7월 12월	물질 1 물질 2 물질 1 물질 7 제품 1	
'35년 4월 7월 9월 10월 12월	~'34년 4월 7월 9월 10월 12월	제품 2 제품 5 제품 2 제품 40 물질 3 제품 92	
'36년 2월 3월 4월	~'35년 2월 3월 4월	제품 21 물질 1 제품 13	
합계		319	

기존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평가 현황

유효기간	제품	I 그룹 (~'25년)	II 그룹 (~'26년)	III 그룹 (~'29년)	IV 그룹 (~'31년)
	물질	~'23년	~'24년	~'27년	~'29년
살생물제품유형		· 살균제 · 살서제 · 기피제	· 살조제 · 살충제	· 목재용 보존제 ·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 건축자재용 보존제 · 재료·장비용 보존제 · 사체·박제용 보존제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